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47호 2018. 11. 30.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38호 삼척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지형도면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139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8
- 삼척시 고시 제140호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 11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88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2
- 삼척시 공고 제890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3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고시 제2018-138호

삼척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지형도면 고시

삼척시 적노동 산29-3번지 일원 전원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04호, 2018.11.13.)'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된 삼척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삼 척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04호(2018.11. 3.)
-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결정·고시
2. 삼척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별도 게재
3. 기타 지형도면 고시 관련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삼척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사항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1,192,521,712.1	-	1,192,521,712.1	100.0	
주거지역	소계	10,120,890.1	-	10,120,890.1	0.8
	제1종일반주거지역	1,627,472.4	-	1,627,472.4	0.1
	제2종일반주거지역	7,822,063.2	-	7,822,063.2	0.7
	제3종일반주거지역	381,996.0	-	381,996.0	0.0
	준주거지역	289,358.5	-	289,358.5	0.0
상업지역	소계	1,026,210.0	-	1,026,210.0	0.1
	일반상업지역	7,734,118.8	증) 6,126	7,740,244.8	0.7
공업지역	소계	1,161,400.0	-	1,161,400.0	0.1
	전용공업지역	5,525,897.8	증) 6,126	5,532,023.8	0.5
	일반공업지역	1,046,821.0	-	1,046,821.0	0.1
	준공업지역	56,590,495.2	증) 9,081	56,599,576.2	4.7
녹지지역	소계	3,910,619.0	-	3,910,619.0	0.3
	보전녹지지역	1,084,500.0	-	1,084,500.0	0.1
	생산녹지지역	51,595,376.2	증) 9,081	51,604,457.2	4.3
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4,918,262.0	-	4,918,262.0	0.4
	소계	166,231,519.0	감) 9,481	166,222,038.0	13.9
	보전관리지역	76,658.0	-	76,658.0	0.0
	생산관리지역	35,886,599.0	감) 855	35,885,744.0	3.0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44,103,053.0	-	44,103,053.0	3.7
	농림지역	86,165,209.0	감) 8,626	86,156,583.0	7.2
	자연환경보전지역	927,783,760.0	감) 4,683	927,779,077.0	77.9
미지정	18,116,457.0	감) 1,043	18,115,414.0	1.5	

※ 미지정은 해면에 한한다.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적노동 산71 일원	자연 녹지지역		33,281	350% 이하	• 전원개발사업구역(발전시설) 편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근덕면 금계리 산26 일원	계획 관리지역	일반 공업지역	3,911		
3	근덕면 상맹방리 산20-3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7,015		
4	적노동 산29-3 일원	일반 공업지역		22,760	100% 이하	• 전원개발사업구역 제척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5	적노동 산29-3 일원	일반 공업지역		1,315		• 전원개발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발전시설→선형시설)
6	근덕면 상맹방리 산33-3 일원	보전 관리지역	자연 녹지지역	2,300		• 전원개발사업구역(선형시설) 편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7	근덕면 금계리 산15 일원	계획 관리지역		17,168		
8	근덕면 상맹방리 산30-8 일원	농림지역		12,793		
9	근덕면 상맹방리 산30-13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575		
10	근덕면 상맹방리 산33-3 일원	자연 녹지지역	보전 관리지역	1,445	80% 이하	• 전원개발사업구역 제척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11	근덕면 금계리 산15 일원	일반 공업지역	계획 관리지역	7,930	100% 이하	• 전원개발사업구역 제척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12	근덕면 금계리 산15 일원	자연 녹지지역		4,523		
13	근덕면 상맹방리 산30-6 일원	자연 녹지지역	농림지역	8,110	80% 이하	• 전원개발사업구역 제척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14	근덕면 상맹방리 산20-9 일원	일반 공업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6,076	80% 이하	• 전원개발사업구역 제척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15	근덕면 상맹방리 산30-13 일원	자연 녹지지역		471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A	9.5	집산도로	1,819	근덕면 상맹방리 산22-3번지	근덕면 금계리 산15번지	일반도로	-	산업부고시 제2018-5호 (2018. 1.11.)	
변경	소로	2	168	9.5	집산도로	1,350	근덕면 상맹방리 산22-3번지	적노동 산29-3번지 일원	일반도로	-	-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2-A호선	소로2-168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로2류 번호 변경 연장 축소 : L= 1,819m → 1,350m (감 469m) 	- 실시설계 반영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나. 유통·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 간선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k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중점	주요 경과지				
기정	2	전기공급설비 (석탄이송터널)	근덕면 상맹방리 산23-2번지 일원	적노동 산29-3번지 일원	적노동 산5번지 일원	1.5	16,052	산업부고시 제2018-5호 (2018. 1.11.)	
변경	2	전기공급설비 (석탄이송터널)	근덕면 상맹방리 산30-11번지 일원	적노동 산29-3번지 일원	금계리 산7번지 일원	1.5	17,042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k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중점	주요 경과지				
기정	3	전기공급설비 (취·배수터널)	근덕면 상맹방리 산20-3번지 일원	적노동 산15번지 일원	적노동 산4번지 일원	1.5	27,755	산업부고시 제2018-5호 (2018. 1.11.)	
변경	3	전기공급설비 (취·배수터널)	근덕면 상맹방리 산33-1번지 일원	적노동 산15번지 일원	금계리 산4번지 일원	1.5	27,429	-	

■ 전기공급설비(간선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	전기공급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탄이송터널 변경 : A= 16,052㎡ → 17,042㎡ (증 990㎡) 	- 실시설계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선형 변경
3	전기공급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배수터널 변경 : A= 27,755㎡ → 27,429㎡ (감 326㎡) 	- 실시설계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선형 변경

- 단위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전기공급설비	적노동 산29-3번지, 상맹방리 476번지 일원	970,265	감 1,990	968,275	-	

■ 전기공급설비(단위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전기공급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시설 변경 : A= 970,265㎡ → 968,275㎡ (감 1,990㎡) 	- 실시계획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선형 변경

3. 삼척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도면: 게재 생략.

삼척시 고시 제2018 - 139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말소)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1. 30.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335-34 외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
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11.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
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광태리 95-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335-34	20181130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 기존 도로명활용	
2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37-12	강원도 삼척시 남양길 17 (남양동)	20181130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3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381-2	강원도 삼척시 봉황마을3길 68 (정상동)	20181130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봉황촌), 일련번호방식활용	
4	강원도 삼척시 봉황마을3길 74-8 (정상동)	폐지	20181130	건물멸실	20090626	지역지명(봉황촌), 일련번호방식활용	
5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381-30	강원도 삼척시 봉황마을3길 70 (정상동)	20181130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봉황촌), 일련번호방식활용	
6		이	하	여	백		
7							
8							
9							
10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주소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광태리 95-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335-34	20181130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 기존 도로명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37-12	강원도 삼척시 남양길 17 (남양동)	20181130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381-2	강원도 삼척시 봉황마을3길 68 (정상동)	20181130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봉황촌), 일련번호방식활용	
폐지	4	강원도 삼척시 봉황마을3길 74-8 (정상동)	폐지	20181130	건물멸실	20090626	지역지명(봉황촌), 일련번호방식활용	
부여	5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381-30	강원도 삼척시 봉황마을3길 70 (정상동)	20181130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봉황촌), 일련번호방식활용	
		총계	5 건					

삼척시 고시 제2018-140호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삼척시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1. 29.

삼척시장

(단위 : 천원)

회계별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 △ 감	증감률
합	계	659,203,555	659,136,023	67,532	
일	반 회 계	612,979,099	612,913,790	65,309	
특	별 회 계	46,224,456	46,222,233	2,223	
상	수 도 사 업	21,347,534	21,347,534	-	
하	수 도 사 업	6,602,771	6,602,771	-	
주	택 사 업	66,460	66,460	-	
발	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752,846	9,752,846	-	
천	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1,228,044	1,228,044	-	
의	료 급 여 기 금	1,245,968	1,243,745	2,223	
자	활 기 금 운 영	1,394,750	1,394,750	-	
농	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1,425,630	1,425,630	-	
주	차 장	1,032,319	1,032,319	-	
임	대아파트관리운영	2,128,134	2,128,134	-	

삼척시 공고 제2018-88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18.11.27. ~ 2018.12.11 (15일간)
3. 말소(예정)일자 : 2018.12.12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우○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261 목조 (1층:71.955㎡ 주택) 목조 (1층:24.8㎡ 창고)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27.

삼척시장

삼척시 공고 제2018-890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계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계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18.11.27. ~ 2018.12.11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18.12.12.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권병○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열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신리 335	
	시멘트블럭조 (1층:62.88㎡ 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27.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건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